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6.12(화)

제261회 임시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최광옥의원 외 7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6월 4일
- 회부일자 : 2007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충청북도 임시회

- 2007. 6. 12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최광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중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위탁계약의 취소사유 구체적 명시 (안 제16조)
 -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개정

○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 “체육청소년과장”을 ⇒ “충청북도지사”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이명우)

○ 본 조례안은

- 2006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도에 대해 규제개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례안 제16조에서 규정한 조문 내용중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라 규정한 내용이 자연학습원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로써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이며,

-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12.22)가 개정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제2항·제9조제2항중 “과장”을 “도지사”로 하며, 제6조제3항 내지 제4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중 “과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u></p> <p>제5조(운영계획)①<u>체육청소년과장</u>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u>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u>도지사는</u>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u>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u></p> <p>2.~4. (생략)</p>	<p><u>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5조(운영계획)①<u>충청북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 …………… …………… ……………</p> <p>1. <u>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u></p> <p>2.~4.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영유아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①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경노재활과, 청소년아동과, 보건위생과를 둔다.

②~⑥(생략)

⑦청소년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